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3.(금) 10:00】

2022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전교통국)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전문위원 배 금 택

□ 안건명: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전교통국)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 제출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본 자료는 원단위 결산액을 백단위에서 반올림 또는 반내림하여 천단위로 표기한 것임

# 목 차

I 일반회계 결산 .....	1
1. 세입결산 .....	1
2. 세출결산 .....	2
II 특별회계 결산 .....	4
1. 세입결산 .....	4
2. 세출결산 .....	5
III 세출예산 집행관련 .....	6
1.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6
가. 총괄 .....	6
나. 예산의 전용 .....	7
다. 예비비 지출 .....	8
2.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	9
가. 총괄 .....	9
나. 명시이월 .....	9
다. 사고이월 .....	11
라. 계속비 이월 .....	14
3.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	15
IV 기금결산 .....	19
1. 총괄 .....	19
2. 기금수입 관련 사항 .....	19
3. 기금지출 관련 사항 .....	20
V 성과보고서 .....	21
VI 종합의견 .....	22

# I 일반회계 결산

## 1. 세입결산 (참고 결산서 p.99~108/결산서보조자료p.24~27)

- 예산현액 433억 8,145만 2천 원<sup>1)</sup>
- 징수결정액 439억 1,386만 6천 원
- 실제수납액 432억 4,751만 6천 원
- 미수납액 6억 6,635만원

###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부서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조정율 (나/가)	징수율 (다/나)
합 계	43,381,452	43,913,866	43,247,516	666,350	101.2	98.5
안전관리과	12,763,037	12,764,707	12,764,053	654	100.0	100.0
건설관리과	5,083,889	4,561,814	4,507,524	54,290	89.7	98.8
도 로 과	17,538,089	17,544,076	17,543,864	211	100.0	100.0
물 관 리 과	3,876,074	3,880,637	3,880,637		100.1	100.0
교통행정과	4,120,363	5,162,633	4,551,438	611,194	125.3	88.2

※ 조정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100, 징수율(%)=(수납액/징수결정액)×100

### 〈전년도와의 세입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조정율 (나/가)	징수율 (다/나)
2022년도	43,381,452	43,913,866	43,247,516	666,350	101.2	98.5
2021년도	37,206,959	38,967,994	38,048,295	919,698	104.7	97.6

-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432억 4,751만 6천 원으로 전년도(380억 4,829만 5천 원) 대비 51억 9,922만 1천원 증가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조정율)은 101.2%로 전년도(104.7%) 대비 3.5% 감소

1) 예산현액(43,381,452천원) = 예산액(21,189,561천원) + 전년도이월액(22,191,891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징수율)은 98.5%로  
전년도(97.6%) 대비 0.9% 증가

-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주로 보전수입(50.7%)과 세외수입(17.5%)임.  
(보조금(12.7%), 보전수입등맞내부거래(50.7%), 세외수입(17.5%), 조정교부금등(10.7%), 지방교부세(8.4%))
- 미수납액은 전액 세외수입<sup>2)</sup>에서 발생함.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이(6억 1,119만 4천원) 전체 미수납액의 91.7%로, 지방  
행정제재·부과금<sup>3)</sup>의 미수납임. 이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99.8%)임.

## 2. 세출결산 (참고 결산서 p.213~223/결산서보조자료 p.40~41)

- 예산현액                                751억 611만 9천 원<sup>4)</sup>
- 지출액                                    424억 1,275만 5천 원(예산현액 대비 56.5%)
- 보조금반납금                            3,496만 3천 원(예산현액 대비 0.05%)
- 집행잔액                                28억 2,685만 6천 원(예산현액 대비 3.8%)
- 다음연도 이월액                        298억 3,154만 5천 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부서별>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다)	지출율 (나/가)	불용률 (다/가)
합계	75,106,119	42,412,755	29,831,545	34,963	2,826,856	56.5	3.8
안전관리과	17,442,823	6,536,679	10,545,374	4,360	356,410	37.5	2.0
건설관리과	789,383	707,975			81,408	89.7	10.3
도로과	35,465,847	18,330,606	16,569,111	27,824	538,307	51.7	1.5
물관리과	12,526,298	9,917,996	1,667,060	2,780	938,462	79.2	7.5
교통행정과	8,881,768	6,919,499	1,050,000		912,269	77.9	10.3

\* 지출율(%)=(지출액/예산현액)×100 , 불용률(%)=(집행잔액/예산현액)×100

2)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과태료(차량관련과태료)

4) 예산현액(75,106,119천원) = 예산액(48,634,618천원) + 전년도이월액(22,191,891천원) + 예비비사용액(4,279,610천원)

〈전년도와의 세출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다)	지출율 (나/가)	불용률 (다/가)
2022년도	75,106,119	42,412,755	29,831,545	34,963	2,826,856	56.5	3.8
2021년도	64,745,836	40,800,346	22,191,891	87,565	1,666,034	63.0	2.6

-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지출율)은 56.5%로 전년도(63.0%)보다 6.5% 감소
-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8억 3,154만 5천원으로 전년도(221억 9,189만 1천원)보다 76억 3,965만 4천원 증가
- 집행잔액(불용액)은 안전교통국 소관 총 28억 2,685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이며 전년도(2.6%)보다 1.2% 증가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집행잔액 (나)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유보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안전교통국 소관	2,826,856	50,998	17,787	98,369	597,328	2,062,374	-

- 안전교통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72.9%인 20억 6,237만 4천원이고, 낙찰차액은 21.1%로 5억 9,732만 8천원임.

## II 특별회계 결산

### 1. 세입결산 (참고 결산서 p.254~258/결산서보조자료p.27~28)

- 예산현액 226억 4,745만 원<sup>5)</sup>
- 징수결정액 285억 8,891만 3천 원
- 실제수납액 218억 8,174만 9천 원
- 미수납액 37억 9,791만 1천 원

####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부서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조정율 (나/가)	징수율 (다/나)
합 계	22,647,450	28,588,913	21,881,749	3,797,911	126.2	76.5
주차관리과	22,647,450	28,588,913	21,881,749	3,797,911	126.2	76.5

※ 징수율(%)=(수납액/징수결정액)×100

#### 〈전년도와의 세입현황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조정율 (나/가)	징수율 (다/나)
2022년도	22,647,450	28,588,913	21,881,749	3,797,911	126.2	76.5
2021년도	23,416,864	34,278,127	25,003,198	8,252,728	146.4	72.9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218억 8,174만 9천원으로 전년도(250억 319만 8천원) 대비 31억 2,144만 9천원 감소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조정율)은 126.2%로 전년도(146.4%) 대비 20.2%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징수율)은 76.5%로 전년도(72.9%) 대비 3.6% 증가
- 주차장특별회계 실제수납은 주로 세외수입(57.8%)과 보전수입(40.2%)이며,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음.

5) 예산현액(22,647,450천원) = 예산액(17,893,297천원) + 전년도이월액(4,754,153천원)

〈특별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장-관-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총액 (나)	환급액 (다)	실제수납액 (라=나-다)	불납결손 (마)	미수납액 (바=가-라-마)
합 계	22,647,450	28,588,913	21,918,728	36,979	21,881,749	2,909,253	3,797,911
세외수입	12,077,846	19,352,310	12,682,124	36,979	12,645,146	2,909,253	3,797,911
경상적세외수입	6,648,840	6,809,393	6,809,393		6,809,393		
임시적세외수입	1,423,638	7,472,192	1,569,286	20,536	1,548,750	2,881,610	3,041,832
기타수입	32,440	59,316	59,316		59,316		
지난연도수입	1,391,198	7,412,876	1,509,970	20,536	1,489,434	2,881,610	3,041,832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005,368	5,070,725	4,303,445	16,443	4,287,002	27,643	756,080

2. 세출결산 (참고 결산서 p.259~264/결산서보조자료 p.42)

- 예산현액                            226억 4,745만원<sup>6)</sup>
- 지출액                                176억 6,731만 5천 원(예산현액 대비 78%)
- 보조금반납금                        3,359만 9천 원(예산현액 대비 0.1%)
- 집행잔액                            31억 2,340만 6천 원(예산현액 대비 13.8%)
-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2,313만원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부서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다)	지출율 (나/가)	불용률 (다/가)
합 계	22,647,450	17,667,315	1,823,130	33,599	3,123,406	78.0	13.8
주차관리과	22,647,450	17,667,315	1,823,130	33,599	3,123,406	78.0	13.8

\* 지출율(%)=(지출액/예산현액)×100 , 불용률(%)=(집행잔액/예산현액)×100

6) 예산현액(22,647,450천원) = 예산액(17,893,297천원) + 전년도이월액(4,754,153천원)

〈전년도와의 특별회계 세출현황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다)	지출율 (나/가)	불용률 (다/가)
2022년도	22,647,450	17,667,315	1,823,130	33,599	3,123,406	78.0	13.8
2021년도	23,416,864	16,201,234	4,754,153	513,714	1,947,763	69.2	8.3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지출율)은 78%로 전년도(69.2%)보다 8.8% 증가
-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313만원으로 전년도(47억 5,415만 3천원)보다 29억 3,102만 3천원 감소
- 집행잔액(불용액)은 31억 2,340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8%이며 전년도(8.3%)보다 5.5% 증가
-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 발생원인은, 지출잔액으로 29억 3,542만 6천원임.  
(전체의 94% 차지)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집행잔액 (나)	원인별					예비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유보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주차장특별회계		3,123,406	4,187	-	-	83,793	2,935,426	100,000

### Ⅲ 세출예산 집행 관련

#### 1.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가. 총 관

-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음
- 예산의 전용: 4건, 3,516만 4천원
- 예비비 지출: 8건, 42억 7,961만원

나. 예산 전용 (참고 결산서 p.270~271)

〈예산의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	전용사유
			감액	증액		
합 계			35,164	35,164		
안 전 관 리 과	안전문화운동(사무관리비)	128,550	5,000		2022-12-13	풍수해보험료 구비분담금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보험금)	5,000		5,000		
	민방위대 관리자교육훈련운영 (기타보상금)	33,552	27,260		2022-3-11	민방위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 위해 예산 전용
	민방위대 관리자교육훈련운영 (사무관리비)	2,000		27,260		
도 로 과	도로계획시설(도로)사업 (사무관리비)	11,300	2,713		2022-10-28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도로계획시설(도로)사업 (기타부담금)			2,713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공공운영비)	32,982	191			
	도로계획시설(도로)사업 (기타부담금)	2,713		191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 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이는,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여야 할 것임.
- 총 4건 3,516만 4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 (안전관리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으로 2,726만원 전용
  - (도로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내 국유재산(외발산동 268-35,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점용 부분에 대한, 변상금 납부를 위해 290만 4천원 전용함.

다. 예비비 지출 (참고 결산서 p.279)

〈(일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지출잔액 (라)가(나)다	예비비 지출 사유
합 계		4,279,610	3,631,668	0	647,942	
(일반예비비) 합 계		1,579,610	1,312,868	0	266,742	
안 전 관리과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무관리비)	55,800	55,800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공공운영비)	25,200	25,200			
도로과	부당이득금및토사이용료 지급(배상금등)	134,657	134,657			공사대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납부
	부당이득금및토사이용료 지급(시설비)	192,953	192,894		59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1,000	81,517		29,483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
교 통 행정과	화물운수종사자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1,060,000	822,800		237,200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합 계		2,700,000	2,318,800		381,200	
교 통 행정과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 (운수업체보조금)	40,000	40,000			서울시 자치구 공동 재난지원금에 따른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지원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2,660,000	2,278,800		381,200	서울시 자치구 공동 재난지원금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총 8개 사업에 42억 7,961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6억 3,166만 8천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마을버스 업체, 택시운수종사자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억 4,160만원,
- (도로과) 부당이득금 소송판결(2022.3.9.피고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1억 9,289만 4천 원,
-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이행을 위해 8,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 가. 총괄

- 명시이월: 12건, 160억 2,435만 3천 원
- 사고이월: 9건, 51억 8,448만 2천 원
- 계속비 이월: 4건, 104억 4,583만 9천 원

### 나. 명시이월 (참고 결산서 p.637~638, p.644)

#### 〈명시이월 내역〉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율	이월사유
합계			29,663,925	16,024,353	54.0	
일반회계			27,137,925	14,976,535	55.2	
안전관리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및 물품 취득비	200,335	99,535	49.7	2022. 12. 19.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도로과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시설비	14,036,872	9,459,000	67.4	토지 보상 수용재결 등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1,300,000	400,000	30.8	2022년 12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22.12.20. 특교금 교부)

부서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명 시 이월액	명 시 이월율	이월사유
도로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2,130,000	1,300,000	61.0	2022. 12. 23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사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시설비	4,900,000	1,700,000	34.7	2022년 10월,12월 특별교부세 및 11월 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사이월 후사업 추진코자 함
	좋은 빛 환경조성 보편등개천	시설비	1,092,418	199,900	18.3	2022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사이월 하고자 함
시 설 부대비		300	100	33.3		
물 관리과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243,000	68,000	28.0	22.12.8.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사이월후 집행하고자 함
	국화대로길 77-국화대로 229 앞대 사각 형거 보수	시설비	700,000	700,000	100.0	22.12.23.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사이월 후 집행하고자 함
교 통 행정과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시설비	500,000	350,000	70.0	2022년 10월 특별교부금이 교부 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사이월 후 사업 추진코자 함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시설비	2,035,000	700,000	34.4	
특별회계			2,526,000	1,047,818	41.5	
주 차 관리과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시설비	2,526,000	1,047,818	41.5	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3년 증축공사 발주 예정

○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년 명시이월액은 160억 2,435만 3천원임. 이는 전년(11건, 118억 4,216만 8천원) 대비 41억 8,218만 5천원 증가하였음.

○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 (도로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중 시설비 94억 5,900만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사업 중 시설비 13억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중 시설비 17억원,
- (교통행정과)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중 시설비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 중 시설비 10억 4,781만 8천원을 이월하였음.

다. 사고이월 (참고 결산서 p.640~641, p.645)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율	이월사유
합 계			20,214,654	5,184,482	25.6	
일반회계			17,400,141	4,409,171	25.3	
도로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설비	14,036,872	3,332,105	23.7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해당 사업의 보상 대상(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함

부서	세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 고 이 월 액	사 고 이 월 율	이월사유
도 로 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사무 관리비	115,320	38,254	33.2	본 용역은 제설대책 기간(2022. 11. 15. ~ 2023. 3. 15.) 중 자동 염수살포장치 배치, 회수 및 염수 보충 등 제설작업을 위해 시행하는 민간위탁 용역으로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 원활한 제설대책 수행을 위하여 사고이월이 불가 피함. 제설대책 기간 중 추가 설치 및 교체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하므로, 예산 사고이월 후 제설대책 종료 후 설계변경 (정산) 및 준공 처리하고자 함
		민간 위탁금	259,201	67,826	26.2	본 용역은 제설대책(준비) 기간 (2022. 11. 1. ~ 2023. 3. 31.) 중 제설함 배치, 보충, 회수 및 제설작업을 위해 시행하는 민간 위탁 용역으로 계약기간이 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사고이월 대상 사업으로 원활한 제설대책 수행을 위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함. 제설 대책 기간 중 강설 횟수, 작업 일수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므로, 예산 사고이월 후 제설 대책 종료 후 설계변경(정산) 및 준공 처리하고자 함
	도로 합몰 예방	시설비	150,000	60,000	40.0	마곡지구 내 도로노선 및 공동복구 물량 증가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민간 위탁금	71,796	11,926	16.6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을 22.03.01.~22.12.31.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23년 예산으로 청소 용역 발주가 불가한 실정으로 용역 기간을 23년 2월 28일까지 연장 하고자 하며, 예산 사고이월 하여 청소용역 기간 종료 후 준공 처리 하고자 함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율	이월사유
물관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시설비	2,566,952	748,286	29.2	동절기 도로동공 및 긴급 하수처리 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함
	안양천 진입로 보행 환경 개선사업 (구주민참여)	시설비	200,000	150,774	75.4	국가하천 안양천에 설치된 진입로에 대한 하천점용 변경 허가 협의(한강유역환경청) 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추진 지연(2022년 12월 1일 하천점용 변경 허가 완료)
특별회계			2,814,513	775,311	27.5	
주차관리과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시설비	500,000	500,000	100.0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안) 유관 부서 협의 절차에 따른 일정지연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	2,314,513	275,311	11.9	유관기관(한진) 전기 사용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공사비 및 기술지도용역, 선암대행 용역 이월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2022년 사고이월액은 총 11건 51억 8,448만 2천원이며, 전년도(10건, 32억 7,876만 2천원) 보다 19억 572만원 증가함.

○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 (도로과) 도로계획시설(도로) 사업 중 시설비 33억 3,210만 5천원,
- (물관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중 시설비 7억 4,828만 6천원, 안양천 진입로 보행 환경 개선사업 중 시설비 1억 5,077만 4천원을 이월하였음.

<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의 시설비 5억원,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중 시설비 2억 7,531만 1천원을 이월하였음.
- 사고이월 중 계약지연, 업무관련 부서의 심의 및 협의지연 등 행정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사업의 경우,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라. 계속비 이월 (참고 결산서 p.642)

<계속비 이월 내역>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계속비 이월액	계속비 이월율	이월사유
합		계	14,275,114	10,445,839	73.2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무관리비	27,891	27,691	99.3	사전행장철차 완료 후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2월 안전교육센터 준공예정
		시설비	13,197,223	9,812,978	74.4	
		감리비	1,040,000	601,320	57.8	
		시설부대비	10,000	3,850	38.5	

- 계속비 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임.
-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sup>7)</sup>은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외 3건, 104억 4,583만 9천원을 이월하였음.

7)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7. ~ 2024. 2.
- 위 치: 마곡중앙로11일대(발산근린공원)
- 건립규모: 대형(지상3층,연면적 3,825.60㎡)
- 내 용: 테마별 체험장 조성(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사회기반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지원조건: 국.시.구 계속비 사업

### 3.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다)	지출율 (나/가)	불용률 (다/가)
합계	97,753,569	60,080,070	31,654,674	68,563	5,950,262	61.5	6.1
일반회계	75,106,119	42,412,755	29,831,545	34,963	2,826,856	56.5	3.8
특별회계	22,647,450	17,667,315	1,823,130	33,599	3,123,406	78.0	13.8

- 2022년 안전교통국 집행잔액은 59억 5,026만 2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1%로 전년도 (4.1%)보다 2% 증가함. 일반회계 28억 2,685만 6천원(집행잔액의 47.5%), 주차장특별회계 31억 2,340만 6천원(집행잔액의 52.5%)이 각각 발생하였음.

#### 〈불용률 30퍼센트 이상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가)	집행잔액 (나)	원인별						불용률 (나/가)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 절감액 (유보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5,594,410	2,441,330	0	0	26,645	38,498	2,376,187	0	44.6
일반회계		1,178,630	555,472	0	0	26,645	36,208	492,620	0	47.1
안전 관리과	재난안전교육	121,850	102,273				720	101,554		83.9
	안전관리계획 수립	7,750	2,650					2,650		34.2
	자율방재단 운영	57,590	17,427					17,427		30.3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47,038	16,167			1,700	5,238	9,229		34.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64,971	29,455				566	28,889		45.3
건설 관리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27,100	24,945			24,945				92.0
	기본경비	108,793	43,462					43,462		40.0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가)	집행잔액 (나)	원인별						불용률 (나/가)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 절감액 (유보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물 관리과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개량 공사	475,600	215,658				29,684	185,974		45.3
교 통 행정과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10,110	9,004					9,004		89.0
	기본경비	257,828	94,431					94,431		36.6
<b>특 별 회 계</b>		<b>4,415,780</b>	<b>1,885,858</b>	<b>0</b>	<b>0</b>	<b>0</b>	<b>2,290</b>	<b>1,883,567</b>	<b>0</b>	<b>42.7</b>
주 차 관리과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2,526,000	1,315,000					1,315,000		52.1
	불법 주·정차 관리	1,663,903	503,083				2,290	500,792		30.2
	기본경비	225,877	67,775					67,775		30.0

※ 주차관리과의 예비비는 제외

○ 세출예산 중 불용률 30%이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 (안전관리과) 재난안전교육 사업의 재난안전체험박람회 행사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 1억 227만 3천원, 83.9% 불용률 발생,
-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의 측량건수 감소·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494만 5천원, 92% 불용률 발생,
- (교통행정과)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상급기관 추진상황에 따라 지자체 홍보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잔액 900만 4천원, 89% 불용률이 발생함.

<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은, 당초 예정되었던 시비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52.1%의 불용률이 발생하였고, 이는 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69.7%를 차지함.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가)	집행잔액 (나)	원인별						불용률 (나/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유보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 계		30,403,437	4,387,150	496	0	0	428,441	3,958,213	0	14.4
일 반 회 계		10,677,869	1,521,249	0	0	0	344,648	1,176,602	0	14.2
안전 관리과	재난안전교육	121,850	102,273				720	101,554		83.9
도로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3,085,953	137,161				96,295	40,866		4.4
물 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3,274,466	<b>447,757</b>				217,949	229,808		13.7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개량 공사	475,600	215,658				29,684	185,974		45.3
교 통 행정과 8)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2,660,000	<b>381,200</b>					381,200		14.3
	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1,060,000	<b>237,200</b>					237,200		22.4
특 별 회 계		19,725,567	2,865,900	496	0	0	83,793	2,781,611	0	14.5
주 차 관리과	주택가 공영 주차장 건설	3,665,341	361,130					361,130		9.9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2,526,000	<b>1,315,000</b>					1,315,000		52.1
	불법주·정차관리	1,663,903	<b>503,083</b>				2,290	500,792		30.2
	공영주차장 관리	2,692,385	116,914	496			81,503	34,915		4.3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7,884,382	321,839					321,839		4.1
	인력운영비	1,293,557	247,935					247,935		19.2

8) 교통행정과의 '화물운수 종사자 지원, 택시 운수 종사자 지원 사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12건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 (물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의 집행잔액은 4억 4,775만 7천원으로 낙찰차액 2억 1,794만 9천원, 지출잔액 2억 2,980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7%임.
- (교통행정과)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의(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집행 잔액은 6억 1,840만원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시 대상자의 거주지 사전 파악이 어려워 16.6%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1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의 우편요금 절감 등 공공운영비 감소 및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 잔액 등으로 5억 30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의 경우, 그 원인(보조금 정산잔액, 사업계획의 변경, 낙찰차액, 잔액발생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불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IV 기금결산

### 1. 총괄 (참고 결산서 p.288, p.290)

〈기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해당부서)	2021년도말 조성액(예치금) (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계	6,338,182	1,482,857	3,362,787	1,879,930	7,821,039
재난관리기금 (안전관리과)	4,405,390	1,354,339	1,461,073	106,734	5,759,729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과)	1,932,791	128,518	1,901,714	1,773,196	2,061,310

-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2,103만 9천원임.
-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5,972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4억 539만원보다, 13억 5,433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131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3,279만 1천원보다, 1억 2,851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2. 기금수입 관련 사항 (참고 결산서 p.305~306)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단위: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나)	수입계획 현액 (다)=(가)+(나)	징수 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가)				
합계	5,394,997	5,824,132		5,824,132	5,866,463	5,866,463
세외수입	80,000	80,000		80,000	122,331	122,331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0	80,000		80,000	122,331	122,3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14,997	5,744,132		5,744,132	5,744,132	5,744,132
보전수입등 (예치금회수)	3,976,255	4,405,390		4,405,390	4,405,390	4,405,390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1,338,742	1,338,742		1,338,742	1,338,742	1,338,742

-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총 58억 6,646만 3천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13억 3,874만 2천원, 기존 예치금 회수 44억 53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233만 1천원임.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나)	수입계획 현 액 (다)=(가)+(나)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가)				
합 계	3,143,993	3,788,791		3,788,791	3,834,506	3,911,177 <sup>9)</sup>
세외수입	1,556,000	1,856,000		1,856,000	1,901,714	1,978,386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6,000	26,000		26,000	43,109	43,1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담금)	1,530,000	1,830,000		1,830,000	1,858,606	1,935,27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587,993	1,932,791		1,932,791	1,932,791	1,932,791

-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결산은 총 38억 3,450만 6천원으로, 기존 예치금 회수 19억 3,279만 1천원, 세외수입 19억 171만 4천원이며, 도로굴착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가 주된 세외수입 증가요인임.

3. 기금지출 관련 사항 (참고 결산서 p.322~324)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나)	지출계획 현 액 (다)=(가)+(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가)				
합 계	5,394,997	5,824,132		5,824,132	5,866,463	
재난관리기금	311,400	449,900		449,900	106,734	
예치금	5,083,597	5,374,232		5,374,232	5,759,729	

-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총 58억 6,646만 3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사무 관리비, 시설비등으로 1억 673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57억 5,972만 9천원을 예치함.

9) 도로굴착복구기금 수납액은, (환급액)76,672천원 + (실제수납액)3,834,506천원 = (수납총액) 3,911,177천원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나)	지출계획 현 액 (다)-(가)+(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가)				
합 계	3,143,993	3,788,791		3,788,791	3,834,506	
도로굴착복구기금	1,505,000	1,805,000		1,805,000	1,773,196	
예치금	1,638,993	1,983,791		1,983,791	2,061,310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은 총 38억 3,450만 6천원으로, 시설비 17억 7,118만 9천원을 포함하여 17억 7,319만 6원을 지출하였고, 20억 6,131만원을 예치함.

## V 성과보고서

### 1. 총괄 (참고 결산서 p.404, p.518~537)

- 2022 회계연도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목표 9개, 지표수 29로 작년 대비 3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며 달성 현황은 초과달성 2개, 달성 18개, 미달성 9개임.

〈안전교통국 정책사업 현황〉

(단위: 개, 천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 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안 전 교 통 국	1	9	29	2	18	9	60,080,070	57,001,580	3,078,490

### 〈미달성 성과지표 사유〉

지표명	달성률	사유
민방위교육 참석률(안전관리과)	96%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방위 교육 관심 저조
가로정비 관리업무 실행지수(건설관리과)	95%	- 납세자의 무재산, 납부의지 결여 등의 이유로 체납
손실보상 추진율(건설관리과)	9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의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인가 시점과 보상착수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 열람공고 등의 일정 지연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건설관리과)	98%	- 납세자의 단순 미납 및 납세 무능력 등의 이유로 체납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실적(도로과)	98%	- 전년대비 목표과다 책정으로 달성률이 미달성됨
도로굴착복구공사 실적(도로과)	99%	- 과년도 대비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 감소
지하수 관리지수(물관리과)	97%	- 민간소유 지하수 개발시설 변동사항(용도변경·폐공에 따른 수질검사 불가)
교통은행질서확립 단속 및 지도(교통행정과)	97%	- 법규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 민원 신고 증가로 행정처분 실적 저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교통행정과)	99%	- 코로나19 영향 및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 태만

## VI 종합의견

-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제150조(결산),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임.

○ 2022년 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천원,%)

년 도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조정율 (나/가)	징수율 (다/나)
합 계		66,028,902	72,502,779	65,129,265	4,464,261	109.8	89.8
2022	일반회계	43,381,452	43,913,866	43,247,516	666,350	101.2	98.5
	특별회계	22,647,450	28,588,913	21,881,749	3,797,911	126.2	76.5
합 계		60,623,823	73,246,121	63,051,493	9,172,426	120.8	86.1
2021	일반회계	37,206,959	38,967,994	38,048,295	919,698	104.7	2.4
	특별회계	23,416,864	34,278,127	25,003,198	8,252,728	146.4	72.9

- 세입 예산현액은 총 660억 2,890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725억 277만 9천원, 실제 수납액은 651억 2,926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8%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86.1%보다 3.7%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율은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
- 2022년도 조정율은 109.8%로, 100%에 가까이 추계하였음.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2021년)120.8%→(2022년)109.8%)

○ 2022년 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다)	지출율 (나/가)	불용률 (다/가)
합 계		97,753,569	60,080,070	31,654,675	68,562	5,950,262	61.5	6.1
2022	일반회계	75,106,119	42,412,755	29,831,545	34,963	2,826,856	56.5	3.8
	특별회계	22,647,450	17,667,315	1,823,130	33,599	3,123,406	78.0	13.8
합 계		88,162,700	57,001,580	26,946,044	601,279	3,613,796	64.7	4.1
2021	일반회계	64,745,836	40,800,346	22,191,891	87,565	1,666,034	63.0	2.6
	특별회계	23,416,864	16,201,234	4,754,153	513,714	1,947,763	69.2	8.3

- 세출 예산현액은 총 977억 5,356만 9천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600억 8,00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5%의 지출율을 보이며 불용률은 6.1%임.
  -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불용률이 작년 대비 2%가 증가하였는데, 당초 교부예정이었던 시비보조금이 미교부되어(특별회계) 구비가 불용 되어버린 사유임.  
(불용률: (2020년)5.1% → (2021년)4.1% → (2022년)6.1%)
  -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 계획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22년 회계연도의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